

'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7. 10. 16 ————— 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1997. 10. 24

다. 상 정 일 자 : 제61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
(97. 10. 28)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정형진 기획감사담당관)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'96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(지출결정액 : 375,601천원, 지출액 : 375,601천원)

- 도로부당이득금청구소송패소토지배상 ----- 375,601천원

3. 검토 의견

-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같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서
- '96년도의 예비비 사용은 장림동 328-15번지 토지 1,190㎡ 사하구가 1974.4.9 도로로 지목변경, 1976년 도로 포장공사를 하여 인근 주민과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하여 왔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사하구를 상대로한 소송을 제기하여, 이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결과 우리구가 패소하였으나 본 용도로 지출할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 예비비를 지출한 사안으로서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 등에 위배되지는 않으나

- 향후는 예산편성시 재정수요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여 사전 계획에 의한 예산을 편성운용하고 재해발생 등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비비를 지출하는 등 예비비지출을 최소화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.

4. 질 의 요 지

- 이화오위원 : 도로부당이득금 청구소송패소에 따른 원인규명
- 김상수위원 : 패소에 따른 토지매입과 관련한 조치계획 규명
- 김병근위원 : '96 예비비 예산액이 1,124,939천원인데 의안에 1,014,268천원으로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사유규명

5. 토 론 요 지 : 없음

6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